

내부제보실천운동

2018년 제2회 정기총회

일시 : 2018년 1월 31일 저녁 7시
장소 : 협동조합 마지



내부제보실천운동

차 례

의장인사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상임대표 인사	
전차 회의록 승인	5
상정의안	11
제1호 의안 : 2017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13
제2호 의안 :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15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45
제4호 의안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47
제5호 의안 : 기타 안건	51
부록	53
정관	
회원명단	

전차 회의록 승인



2017년 창립총회 회의록

- ▣ 일시 : 2017년 3월 15일 17시부터 3월 22일 18시까지
- ▣ 방식 : 온라인 창립총회

내부제보실천운동

2017년도 제 1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총회 회의록

1. 일시 : 2017년 3월 15일 17시부터 3월 22일 18시까지

2. 장소 : 온라인 창립총회(정관 제 13조 4항에 의거)

3. 참여회원(발기인) : 134명 (발기인 240명)

4. 회의안건 :

- 제1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상임고문과 자문위원 추대의 건

5. 부의안건 심의

가. 정관승인(안)의 건 :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다.
148명의 참여인원 중 148명이 동의하여 정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나. 임원선임 추천(안)의 건 :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다.
148명의 참여인원 중 145명이 동의하여 임원선임 추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공동대표(9인)

김병후(김병후 정신과의원 원장), 김용휘(천도교 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주언(전KBS이사),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대표), 박대성(원불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 송병춘(변호사), 양시경(제주경실련 공익센터장), 유영권(연세대 신학대학장, 상담심리학 학장), 허태곤(참여불교 재가연대 상임대표)

상임대표(3인)

백찬홍(에코피스 아시아 상임이사), 이지문(호루라기재단 이사, 전 육군 중위), 한만수(동국대 교수)

감사(2인)

박광서(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안성재(신아법무사사무소 대표)

다.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2017년 사업계획을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다.

148명의 참여인원 중 147명이 동의하여 2017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2017년도 사업계획(안) 개요

1) 목표: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과 공익재단 설립, 독립적인 국가청렴기구 추진을 기본 목표로 한다.

2) 입법 활동 및 기구 설립 추진

- 각 당 대선후보 초청 '반부패정책 토론회' 개최
- 내부제보자 보호법 추진
- 국가청렴위 부활 추진

3) 제보자 지원활동

- 내부제보자 신고센터 설립
- 내부제보자지원 재단설립

4) 조직 활동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회원확대
- 임원 워크숍

5) 홍보활동

- 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
- 리플렛 제작

6) 재정사업

- 스토리펀딩
- 후원의 밤 및 토크콘서트 등

7) 대외협력사업

- 내부고발 단체와 연대 활동
- 반부패국제기구 및 국제NGO와 연대 활동

라.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2017년 예산을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다.
 148명의 참여인원 중 147명이 동의하여 2017년도 예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수 입		지 출			
스토리 편당	50,000,000	사업비	입법지원	토론회	3,000,000
회 비	15,000,0000			입법 활동비	6,000,000
후원금	15,000,000 (후원의 밤 등)		내부제보지원	제보자지원	15,000,000
		신고센터/재단설립 활동		4,000,000	
				소계	28,000,000
		경상비	인건비	사무국장	20,000,000(200*10)
				간사	9,000,000(150*6)
			관리비	통신비/소모품비/용역비/발송비/임대비	6,000,000
				소계	35,000,000
		지원비	회의비	총회	500,000
				임원회	1,500,000
			홍보비	리플렛 제작, 자료집 제작	2,000,000
				홈페이지 관리	500,000
			행사비	후원의 밤	5,000,000
		토크콘서트 등		2,500,000	
				소계	12,000,000
				예비비	5,000,000
총계	80,000,000		총계		80,000,000

마.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안)의 건

: 상임고문과 자문위원을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다.

148명의 참여인원 중 148명이 동의하여 상임고문과 자문위원 추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고문(7인)

강만길(사학자), 백낙청(창작과 비평 전 편집인), 신경림(시인), 이문옥(감사원 전 감사관), 조정래(소설가), 청화(스님), 함세웅(신부)

자문위원(10인)

강기석(경향신문 전 편집국장),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김태준(동국대 명예교수), 문성근(배우), 성해용(목사), 송주명(민교협 상임대표), 신학림(미디어오늘 전 사장), 이시영(시인), 정남기(한국언론재단 이사), 조 은(동국대 명예교수)

총회의 의사 진행의 경과와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온라인 투표결과를 기반으로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하다.

2017년 3월 30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의장 : 한만수



서기 : 이지윤



상정의안



제 1호 의안

2017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17년 종합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8항

감사보고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의 2017년도 활동과 업적을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총평:

(1) 2017년도 지출은 활동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2) 창립 이후 사회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단체로 부상해 언론과 세인의 주목을 받는 등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내부조직을 강화하는 데는 소홀해 단체의 내실 다지기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2. 사업

(1) 공익기금마련 플리마켓, 비전워크샵(2회), 후원의날-토크콘서트, 스토리펀딩, 방산비리 영화,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 등 1년 사이 해낼 수 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사회적 인지도 및 기금마련 차원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에 인색하고 싶지 않습니다.

(2) 하지만, 단체의 주어진 역량에 비해 사업 수가 많다보니 이벤트성으로 치러내는 데 온힘을 기울여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는 오히려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체의 위상과 조직의 강화, 사회변화 효과라는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직·재정

(1) 창립발기인이 162명이었는데 현재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수는 68명, 전체 예산 중 회비 수입 비중도 8.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재정이 회원의 회비가 아니라 이벤트성 단기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조직확장성과 재정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회비수입이 재정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공동대표제는 역할분담이 잘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빛이 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한 분을 상임대표로 선출, 조직과 재정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직접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 여부는 물론 회비 책정 단계에서도 직접 상의, 요청 드리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3) 일반회원이 재미와 의미를 피부로 느끼는 참여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회원확대, 조직강화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31일

감사 박광서



제 2호 의안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17년 사업 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3항

내부제보실천운동 2017년도 사업연혁

1월	16	내부제보실천운동 출범 / 발대식(국회)
2월	04	의리야리 프리리마켓 - 내부제보자 공약기금마련 플라마켓
	10	스토리펀딩 - ‘내부제보자’ 진실을 말한 이유 (04.25.까지 75일간 진행 / 1,890건 후원 참여, 43,345,791원 모금)
	22	대선후보 공약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서 전달
3월	09	내부제보자 색출을 지시한 코이카 이사장 고발(성남지검)
	13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제보자지원본부 정책전달식
	24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19대 대선후보 반부패 청렴공약 설문결과 기자회견
4월	01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명과 목표설정을 비전워크샵(서울 팀비전센터)
	19	공약제보자보호법 제정, 청렴위원회 신설 촉구 기자회견(국회 정문관) 5개정당 대선 후보자에 공약제보자 보호법 제정 및 청렴위원회 요구 성명서 전달
	26	‘내부고발자를 발탁,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성명서 발표
5월	29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고영한 대법관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중앙지검)
	30	부패방지과 내부공약제보자 보호법 개정안 공청회(정성호, 전해철, 이정미 의원 참여)
	09	‘해군의 내부제보자 탄압과 국가문란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6월	19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와 ‘계양적 대법원장제’ 철폐 등 법원민주화 촉구’ 기자회견
	23	내부제보실천운동 <후원의 날> 공약제보자 힘! 토크콘서트(마지)
	11	인권위의 내부제보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진상 조사 촉구 및 공문 발송 공약신고자 배현봉씨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건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공문 발송
7월	20	국민권익위원회 초청 민관협력 반부패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이지문 상임대표)
	24	성범죄 대리합의 내부제보 여군장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국방부)
	03	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공개 조사관 전보 조치 성명서 발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의 내부제보자 보복성 징계 중단 촉구 공문 발송
	04	SBS 나도펀딩 & 해피빈 스토리펀딩 (09.22.까지 50일간 진행/ 729명 후원 참여, 8,731,304원 모금)
	19	조직강화와 발전을 위한 <비전워크샵> 워크샵(서울 예벗커뮤니티 센터)
8월	28	홍콩국제학교장 자녀 수시입학전형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 사실확인 촉구 공문 발송
	30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 / 고발인(한만수대표) 조사 착수
	07	‘효성중공업의 한수원 입찰담합과 내부공약제보자에 대한 갑질 규탄’ 성명서 발표
	02	공약제보자(황규한)에 대한 인사명령처분 촉구 기자회견(국정원 앞)
12월	01	(추첨한동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이행촉구의 건 공문 발송
	08	2017 내부제보실천운동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29일	영화 1급기밀 시사회

내부제보실천운동 2017 활동실적

활동내용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일시	01.16.	장소	국회 의원회관	참여인원	약100명

-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보상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며, 내부제보 사건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요구할 것임



<출처 : 뉴스천지>



<출처 : 경향신문>

<심포지엄>

- | | |
|--|---|
| <p>- 발제 1 : 이지문(호루라기재단 이사)
국정농단 사태로 본 내부고발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고발자 보호의 의미와 법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고발자가 겪는 보복 수준, 부패수준,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련 법령 미비 : 내부고발자들이 겪는 고통 등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필요 - 공익신고자지원재단(공익신고자지원기금) 설립 - 부패고백위원회(양심고백위원회) 설립 - 기타 활성화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필요 ② 국민권익위의 독립성 확보 중요 ③ 미디어 통해 고발한 신고자 보호 ④ 불이익 당한 신고자에 대한 상담제도 도입 ⑤ 위임 신고 가능 ⑥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제재 강화 ⑦ 협소한 공공기관 개념 재정립 필요 ⑧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⑨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상승 조치 부여 ⑩ 합리적 믿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
|--|---|

<표 계속>

<p>- 발제 2 :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 소장)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강화의 필요성 : 내부고발 사례를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내부제보자보호제도의 현실태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보장, 신분보호, 책임감면, 포상금 및 보상금,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시 처벌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신분보호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내부제보로 인한 해고 등으로 입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보호대책 미흡 : 보상금 지급 요건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공익신고자가 현실적이며 미래에 입을 손해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미흡 - 내부제보자 보호제도 강화 필요성 - 내부제보자 보호제도 강화 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리 사전 예방으로 사회적 손실 방지
<p>- 발제 3 : 송병춘(변호사) 내부고발 사건의 조사 및 수사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고발의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형, 기업형 비리, 조직적 비리 : 내부고발자가 사회적 약자이므로 보복 우려 : 공정한 조사·수사 징계·재판 등 어려움 : 조직 내부 갈등관계 표출 -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공익제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권력형 비리에 관한 부분 제외하고 민간의 공익침해행위에 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함 - 내부고발 사건 조사·수사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고발자 전담 수사·조사 기관의 부재 : 조사 기관의 독립성 결여 : 검찰 및 사법기관의 권한 남용 - 개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등의 신고 포함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 실질화 : 내부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특례 규정 : 검찰기관의 독립성 보장 :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분권화

활동내용		의리의리 프으리 마켓			
일시	02.04.	장소	협동조합 마지	참여인원	약70명

- 내부제보자 공익기금마련 플리마켓
- 내부 고발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 운동의 확산을 돕기 위한 플리마켓
-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돼 지난 16일 출범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월 4일 낮 12시 서울 방배동 사찰음식전문점 마지서 내부제보자를 위한 '의리의리 프-으리 마켓'을 소셜 펀딩 일환으로 개최



<언론보도>

2017.01.19.	현대불교신문	내부제보운동 확산 돕는 플리마켓 열린다
2017.01.24.	불교닷컴	내부제보자 돕기 프리마켓... 2월 4일 방배동 '마지'
2017.01.30.	천지일보	내부고발자 돕기 기금 마련 '플리마켓'...종교계, 시민단체 뭉쳤다
2017.01.31.	한겨레	내부고발자 돕기 기금 마련... 시민사회, 종교계가 뭉쳤다

활동내용		스토리펀딩 - '내부제보자' 진실을 말한 이유			
일시	02.10. - 04.25.	장소	다음	참여인원	1,890건 후원

Project story_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해고되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진실을 말한 자가 상처받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제보자들이 밝히는 진실과 그후의 삶을 통해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Funding plan_

모아진 펀딩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모아주신 소중한 기금은 내부제보자들의 소송비 지원, 긴급 생활자금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Details_

여기 큰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 비리를 제보한 전경원 전 교사.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군납비리를 제보한 김영수 전 대한민국 해군 소령. 이들은 모두 내부제보자입니다. 진실을 폭로한 대가는 무섭습니다. 해고? 보복? 그들은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부제보자는 법적으로 신변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결정적 증언을 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할 때마다 독특한 카키색 코트만 입었습니다.

독특한 카키색 코트는 노승일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만큼 진실을 알리는 일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동안 내부제보자들이 언론에 밝힐 수 없었던 속내, 밝혔으나 끝내 전해지지 않았던 모든 진실을 낱알이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내부제보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힘들고 힘들었을 그 이야기를 고통스럽지만 다시 꺼내 주셨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을 누구보다 응원하기 때문입니다.

<표 계속>

우리는 내부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내부제보가 결코 멀리 있지 않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부제보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내부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이번 펀딩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내부제보자들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진짜 내부제보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1화		“나는 입시비리 고발한 해임교사”
2화		온 국민 속인 수상한 국제전화
3화		해임교사로부터 온 짧은 편지
4화		당신의 아파트는 안전하십니까
5화		그들은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6화		상사가 ‘이 후보 찍어라’ 강요한다면
7화		아무도 몰랐던 썩은 밀가루의 진실
8화		현대차 리콜 부른 ‘김 부장의 내부고발’
9화		장애인 인권 유린 현장을 고발하다
10화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군납비리 고발자

활동내용		내부제보실천운동 내부제보자 축출 지시한 코이카 이사장 고발			
일시	03.09.	장소	성남지검	참여인원	약5명

- 내부제보자 축출 지시, 국제협력단(KOICA) 김인식 이사장을 규탄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 3월 9일 성명서 발표
 “공공기관장이 임직원에게 그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코이카 내부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 공익에 기여했고, 코이카 내부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코이카 직원의 주된 제보 내용은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 관해 고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컨설팅비용 등의 이권을 취하게 하고 주식을 취득했다는 알선 알선수재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며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알선수재를 비롯해 뇌물죄, 수뢰죄, 횡령죄 등을 내부 고발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요죄로 고발했다.”



<출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홈페이지>

<언론보도>

2017.03.09.	연합뉴스	내부제보실천운동 "제보자 색출지시 코이카 이사장 고발"
	한겨레	"최순실 연루 의혹' 코이카 이사장, 내부제보자 색출 지시"
	경향신문	"내부 제보자 축출시켜라"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시민단체에 '강요죄' 고발...
	투데이코리아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 "최순실 국정농단 내부제보자 색출해 축출 지시"
2017.03.10.	인천일보	부패신고 방해' 코이카 이사장 고발
	경기일보	내부 제보자 축출 지시한 코이카 이사장 고발 당해

활동내용		정책제안서 전달			
일시	03.13.	장소	여의도 BnB 빌딩	참여인원	약10명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서 전달 : 대선후보 이재명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홈페이지>



<출처 : 뉴스시스>

<언론보도>

2017.03.13.	연합뉴스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뉴스1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내부고발자 보호"
	로이슈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공익제보 내부고발자 보호"
	아주경제	이재명 "공익제보자 보호 부정부패 뿌리뽑겠다!"
	KNS뉴스통신	이재명, 13일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시켜
	머니투데이	이재명, 공익제보 독려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브릿지경제	이재명, 공익제보지원본부(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국제뉴스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
	아시아투데이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핵심 공약 발표도
	인천일보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자지원본부' 출범

활동내용		19대 대선후보 반부패 청렴공약 설문결과 기자회견			
일시	03.24.	장소	우리함께빌딩	참여인원	약10명

- 19대 대선후보 반부패 청렴공약 설문결과 기자회견 / 대선후보 반부패, 청렴공약 설문 조사 결과 기자회견



<출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홈페이지>

<언론보도>

2017.03.24.	연합뉴스	대선후보 청렴공약 설문결과 기자회견
	연합뉴스	대선후보들의 청렴공약은?
	연합뉴스	대선후보들의 청렴공약은?
	연합뉴스	대선후보 청렴공약 설문결과 기자회견
	연합뉴스	대선후보 청렴공약 설문결과 기자회견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연합뉴스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해야"
	뉴스1	대선후보들 "반부패 담당할 독립적 국가기관 설치해야"
	불교포커스	대선 후보들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 필요하다" 한 목소리
2017.03.25.	강원도민일보	"공수처 신설, 기소 독점권 폐지"
2017.03.26.	국제신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등 대선주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필요" 한 목소리

활동내용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 청렴위원회 신설 촉구 기자회견			
일시	04.19.	장소	국회 정론관	참여인원	약 15명

-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 청렴위원회 신설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무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및 대통령과 그 친인척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하라!
 내부 공익제보사건을 전담하고 청렴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인 '청렴위원회' 신설하라!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하라!
 청와대에 '공익제보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렴비서관' 신설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해충돌방지 조항 포함하라!
 청소년의 청렴인식 강화 위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교육 과정 포함하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공익제보 지원관' 신설하라!
 내부 공익제보자 지원하는 '공익제보지원법인' 신설하라!
- 5개정당 대선 후보자에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 및 청렴위원회 요구 성명서 전달



<출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홈페이지>

<언론보도>

2017.04.19.	공감신문	서영교 의원, 각 당 대선후보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정책 제안
	나눔뉴스	서영교의원,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 및 청렴위원회 신설' 촉구
	서울뉴스통신	서영교 의원,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 청렴위원회신설 촉구
	글로벌뉴스통신	서영교,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 요구

활동내용	‘내부고발자를 발탁, 증용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성명서 발표
------	---

<언론보도>

2017.06.01.	오마이뉴스	내부고발자 증용한 문재인 정부의 품격
-------------	-------	----------------------



▲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지난 5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검사.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김형연 판사. 이들의 공통점은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했던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이다.

윤석열 검사는 국가정보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던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다.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점을 포착했다.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증거물도 압수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검사장급 검찰 간부는 그가 체포한 국정원 직원을 즉각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또한 압수한 증거물도 되돌려주라며 부당한 수사개입과 압력을 행사했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에 출석한 그는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수사개입과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내부고발을 감행했다.

결과는 여타 내부고발자들의 운명과 다르지 않았다. '항명'이라는 사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최근까지도 지방 검찰청 한직을 전전했다. 속된 말로 검찰 수뇌부에 단단히 찍혔던 셈이다. 그런 그가 검찰의 최고 요직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김형연 판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내부고발을 실천해 온 강직한 성품의 법조인이다. 이미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각급 법원이 경쟁적으로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이 본연의 재판 업무에 헌신할 수 없음을 내부고발로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다.

실적을 위해 재판 업무와 별개로 이리저리 불려 다녔으며, 판사의 직접 보고를 요하는 사안은 갈수록 증가하며, 사건처리율, 조정성공률, 법정개정시간 등의 통계수치와 관련해 판사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었다고 고발했다. 그런가하면 최근엔 사법부 판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과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이 일자 그는 내부고발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렸다.

이처럼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권력과 맞서 싸웠던 내부고발자들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에 증용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하며 드디어 우리나라도 품격 있고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된다.

<표 계속>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과 처우 바뀌어야

국가의 성숙도와 품격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이다. 선진국일수록 내부고발을 철저히 보호한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열망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내부고발을 대하는 인식과 처우는 여전히 조직폭력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조직을 배반한 배신자로 낙인찍고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괴롭힌다. 조폭 집단의 사고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 내부고발이야말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망가지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기에, 외면하며 침묵의 연대에 순응할 수 없었기에, 고통을 감내하며 내부고발을 단행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닥쳐올 해직과 배제와 차별을 감수하면서까지 결단하는 충정심의 발로인 셈이다.

올해 들어 부패방지법이 통과되었다. 더 많은 분야에서 내부고발의 방식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해 씁쓸하다. 나름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본다. 결론은 이미 학습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다. 내부고발을 했다가는 조직에서 배신자로 취급받고 왕따가 된다. 게다가 직장을 잃고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현실이 이런데 누가 감히 용기 내어 내부고발을 결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은 잘못되고, 부조리하며, 부정과 불법이 횡행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용인하며 외면한다. 남들도 다 모른척하며 침묵하는데 쓸데없이 나섰다가 온갖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냉혹한 벽 때문이다. 그래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다. 그저 모른 척 외면하게 된다.

내부고발자 우대하는 시스템 만들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비리와 부정을 알면서도 조직 내부에서 묵인하며 침묵하는 사람들보다 내부고발자가 더 잘 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새로 임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보다 확실하게 이뤄지게 되면 다른 구성원들도 불의에 침묵하며 순응하지만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회는 보다 정의로워지고 상식이 통하며 사람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형연 청와대 법무담당 비서관 이 두 내부고발자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발탁은 참신하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 우리 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단계로 진입시켜준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이분들의 발탁을 두고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며 반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활동내용		내부제보실천운동, 판사 블랙리스트 대법관 고발 고영한 대법관 외 2명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일시	05.29.	장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참여인원	약5명

- 내부제보실천운동, 판사 블랙리스트 대법관 고발
- 고영한 대법관 외 2명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고발장 접수



<출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홈페이지>

<언론보도>

2017.05.28.	뉴스스	시민단체 "사법행정권 남용' 법원행정처장 내일 고발"
	아시아투데이	시민단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행정처장 29일 검찰 고발
	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고발"
	경향신문	[사법부 개혁] "대법, 사법개혁 저지 의혹" 보도로 촉발... '판사 블랙리스트'
2017.05.29.	연합뉴스	시민단체, 검찰에 '사법행정권 남용' 법원 고위간부들 고발
	경향신문	[경향포토] 사법개혁저지 연루인 고발장 접수
	경향신문	[경향포토] 사법개혁저지 연루인 고발장 접수하는 내부제보실천운동
	내일신문	"공익제보 있어도 사실확인 안해"
	tbs 교통방송	시민단체, '사법행정권 남용' 법원 고위간부들 고발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고발돼
	로이슈	시민단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고발
	아시아투데이	시민단체, '사법행정권 남용' 고영한 대법관 등 검찰 고발
	불교포커스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 ... 내부제보실천운동, 법원 고위간부 검찰 고발
불교닷컴	"공익제보 있어도 사실확인 안 해"	
2017.05.30.	아시아투데이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직권남용죄 해당될까
2017.05.31.	경향신문	서울고법도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결의
	스페셜경제	[종합] 사법개혁 축소 의혹, 소송전 비화... 양승태 고심 깊어지나?

활동내용		부패방지과 내부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안 공청회			
일시	05.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참여인원	약 20명 (의원, 기자 제외)

- 주최 : 이정미의원실, 내부제보실천운동
- 참여 : 이정미의원, 전해철의원, 정성호의원
- 토론 : 김형남(신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백찬홍(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김영수(군남비리 내부 제보자), 양동훈(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 이상수(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이재일(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장정욱(서울시 옴브즈만 위원), 조호연(경향신문 논설위원)



<출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홈페이지>

<공청회>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법률(안) 어떻게 입법화 되도록 추진할 것 인가
 -입법화를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김영수 :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 내부제보실천운동 대변인)

- 국회 :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및 청렴위원회 신설 소위원회 신설하여 구체적인 법률개정안과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후 적극 추진 필요
- 청와대 :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사항 작성하여 제출 후 적극적인 추진 필요
- 권익위 : 구체적인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방안 및 청렴위원회 조직구성 방안 국회와 정부 제출 필요
- 내부공익제보사건 실제로 처리한 결과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공익제보 활성화가 우리 사회 투명성 향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보여줄 필요 있음
-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신설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배치하여 실제 공익제보 사건 상담 및 지원필요

<표 계속>

<p>공익제보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장정욱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 없어야 공익제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익제보를 위법행위의 신고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할 필요 있음 - 공공역역(부패신고), 민간영역(공익침해신고)의 구분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 보호해야 사립학교의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내부의 공익제보자 보호에 집중해야 - 반부패기구의 공익제보처리 실효성 강화해야 반부패기구의 직접 조사권한 확보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강화 재정신청 권한확대 및 공소유지 업무 담당
<p>통합 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 가능할 것인가? (이상수 :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행위 신고 통합 법안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79개 법률에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보다 광범위한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가능 - 부정한 행위의 신고.접수 기관의 범위를 신설 독립기구인 청렴위원회, 국회의원, 언론, 지방자치단체, 공익제보자보호재단 등으로 확대 - 공익제보의 방법에 있어서 익명의 공익제보와 대리인 신고를 신설 -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 등의 범죠행위가 발견된 경우, 피해보자등에 대한 조사 종료시까지 형사소추를 유예 요청하는 책임감면 조항 신설 - 공익신고자가 법원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조치 가능

<언론보도>

<p>2017.05.26.</p>	<p>불교포커스</p>	<p>내부공익제보자 보호법률개정 위한 국회공청회 30일</p>
	<p>불교닷컴</p>	<p>내부공익제보자 보호법률개정 공청회</p>
<p>2017.05.30.</p>	<p>경향신문</p>	<p>“내부제보자, 촛불 역할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p>

활동내용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와 ‘제왕적 대법원장제’ 철폐 등 법원민주화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일시	06.19.	장소	사법연수원	참여인원	약 5명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와 ‘제왕적 대법원장제’ 철폐 등 법원민주화 촉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는 지난 2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이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학술대회를 준비하자 법원행정처 간부가 일선 법관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내부제보자의 진술이 나왔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수뇌부의 조직적인 부당개입도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말았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를 중시하여, 내부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진 법원 판사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5. 29일). 검찰은 마땅히 이에 대한 철저히 신속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하나. 국민과 법관들의 신임을 잃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법관대표자회의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법부의 전면적 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검찰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3인에 대해 엄중 수사하여 책임자를 엄벌하라.



<출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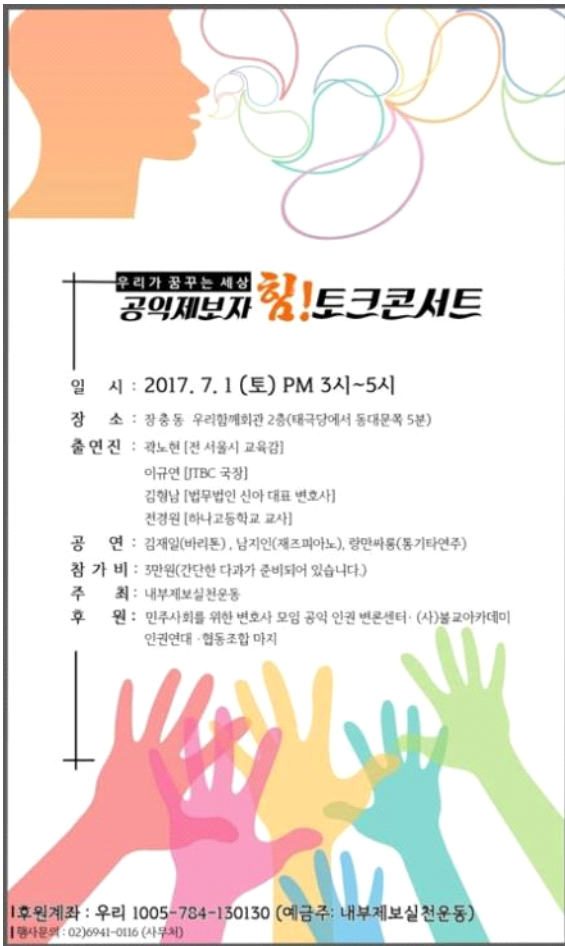
<언론보도>

2017.06.19.	뉴스1	檢,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대법원장 등 고발건 수사 착수
	불교닷컴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고영한 등 엄정수사 촉구"

활동내용		공익제보자 힘! 토크콘서트			
일시	07.01.	장소	우리함께빌딩	참여인원	약 80명

- <후원의 날> 공익제보자 힘! 토크콘서트

출연 : 박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교사, 이규연 JTBC 국장, 김형남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



<언론보도>

2017.06.18.	연합뉴스	[게시판] 내부제보실천운동, 내달 1일 공익제보자 토크콘서트
2017.06.30.	뉴시스	[소식] 내부제보실천운동, 공익제보자 힘! 토크콘서트
2017.07.02.	일요서울	공익 시민단체, '내부 고발자'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활동내용		민관협력 반부패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			
일시	07.20.	장소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참여인원	이지문 상임대표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활동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새정부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



<출처 : 연합뉴스>

<언론보도>

2017.07.20.	이데일리	권익위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 민관협력해야”
	뉴스1	권익위, 시민단체와 文정부 ‘반부패 정책’ 의견 교류
	로이슈	권익위 “새 정부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 민관협력 해야”
	이뉴스투데이	“민·관협력...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을”
	KNS뉴스통신	민관협력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 나선다
	정책브리핑	“민관협력으로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을”
2017.07.21.	연합뉴스	권익위원장 “반부패 활동에 시민사회단체 역할 중요”

활동내용		성범죄 대리합의 내부제보 여군장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07.24.	장소	국방부	참여인원	약5명

- 성범죄 대리합의 내부제보 여군장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출처 : 중앙일보>

<언론보도>

2017.07.24.	뉴스시스	'군 성범죄 대리합의' 보복성 인사 중단 촉구
		"성범죄 대리 합의 제보 여군 소령에 보복인사 중단"
		[종합] 시민단체 "성범죄 대리 합의 제보 여군 소령에 보복인사 중단"
	국민일보	'성범죄 대리합의 내부제보 여군 보복성 인사 중단하라'
		제2 피우진 사건...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 소령에 인사보복" 사실과 달라
	연합뉴스	'성범죄 내부제보' 여군 장교 보복 인사 철회 촉구 기자회견
		'내부제보 여군 장교' 보복성 인사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
		"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 소령에 보복인사"
		"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 소령에 보복인사"(종합)
	직설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하면 징계로 복수?
	중앙일보	내부제보실천운동 "여군장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중단하라"
	tbs 교통방송	육군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소령에 보직해임 진행해
	쿠키뉴스	시민단체, "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女소령에 보복인사"
	신아일보	육군 3사관학교 "대리합의' 거부 소령, 보복인사 아니다"
KBS뉴스	시민단체, "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 소령에 보복인사"	
데일리안	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에 징계 절차 착수... 시민단체 반발	
MBN	시민단체 "육군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한 여군 소령에 보복인사"	
천지일보	"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합의' 폭로자에 보복성 인사"	

활동내용	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공개 조사관 전보 조치 성명서 발표
------	--

<언론보도>

2017.08.03.	연합뉴스	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공개' 조사관 전보조치
	SBS뉴스	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공개' 조사관 전보조치
	세계일보	내부 제보자 신분 드러난 공문 발송한 인권위 조사관, 인사조치 및 경고
	KBS뉴스	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공개' 조사관 전보조치
	뉴스시스	인권위, 학교폭력 제보자 실명 알려준 조사관 전보조치
	헤럴드경제	인권위, '학폭 내부제보자 공개' 조사관 전보조치
	뉴스1	인권위, '내부제보자' 신원공개한 조사관 전보 조치
	한강타임즈	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실명 알려준 조사관 전보 조치
	연합뉴스	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공개' 조사관 전보조치(종합)
	YTN	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공개' 조사관 전보 조치
	매일경제	인권위 '학교폭력 내부제보자 공개' 조사관 전보조치
2017.08.04.	내일신문	내부제보자 노출한 인권위 조사관에 '경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내부제보자를 학교에 공개한 조사관을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인권위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내부제보자의 신원을 학교 측이 알도록 한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에서 인권위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가 공개한 회신 공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조사 결과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로 진정사건 참고인 실명이 피진정기관, 학교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직원이 조사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인사조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아울러 조사국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회신했습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가 '경고'로는 충분치 못하다"면서 "해당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중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비정규직 교사가 목격자 진술서를 쓴 사실을 학교가 알 수 있도록 기재된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출처 : SBS 뉴스

활동내용		SBS 나도펀딩 & 해피빈 스토리펀딩			
일시	08.04. - 09.22.	장소	SBS 환경재단	참여인원	729명 후원

- 09.22.까지 50일 진행, 729명 후원 참여

정의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들이 그들입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던 그들. 그러나 내부고발 이후 그들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정의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출처 : SBS 스프스뉴스>

용감한 고발

2015년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전경원교사는

“입학 성적 입력시 엑셀 파일 조작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로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원 교사는 성적 조작과 합격생 바꿔치기 등의 입시 비리 폭로했고 공익제보 이후 압력과 탄압, 학교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따돌림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폭로 이후 담임에서 배제되더니 어느날 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갑작스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날까지 함께 수업하던 아이들에게는 인사도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전 선생님은 다행히 복직되었지만 공익제보자로서의 삶은 힘들기만 합니다.

청춘을 바친 직장에선 해고되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진실을 말한 자가 상처받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제보자들이 밝히는 진실과 그후의 삶을 통해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조직의 복수, 배신자라는 낙인, 짧은 결단에 비해 너무나도 긴 고통,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내부고발자**들은 하나같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지언정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부고발 후의 고난을 예상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내부고발을 단행한 그들의 삶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펀딩 금액은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통해 내부제보자들의 소송비 지원, 긴급 생활자금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활동내용		SBS 나도편딩 & 해피빈 스토리편딩			
일시	08.04. - 09.22.	장소	네이버	참여인원	729명 후원

- 09.22.까지 50일 진행, 729명 후원 참여

정의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들이 그들입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던 그들. 그러나 내부고발 이후 그들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나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차마 모르는 척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대형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상용 기름은 유독 성분이 많이 나와 육지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이 불법 유통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직접 그 기름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회사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당신은 나르는 일만 똑바로 하라고, 나머지는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부고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해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는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레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회사 측과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영수증 전표 등 필요한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회사의 잘못이 입증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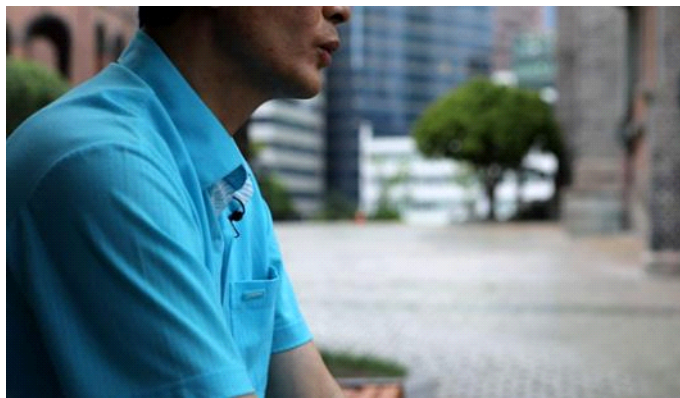
<표 계속>



어느 날, 생명을 위협하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보했다는 사실부터, 경찰에 넘긴 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섯 달 동안의 도피생활은 끔찍했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공격받지 않을까 걱정이 됐고, 머리맡엔 항상 칼을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부고발자로 소문이 났는지, 20년 넘게 탱크로리를 몰았지만 재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해피빈과 SBS 나도편당이 응원합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다시 그에게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내부고발자의 길을 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현실. 편당으로 후원된 금액은 목숨을 걸고 내부고발을 한 뒤 어렵게 지내는 이 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분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활동내용		내부제보실천운동 비전워크샵			
일시	08.19.	장소	서울 예벳 커뮤니티센터	참여인원	약 20명

- <비전워크샵> 내부제보실천운동 워크샵



<출처 : 내부제보실천운동 홈페이지>

비전워크샵

- 핵심목표

1. 활동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 내부공익제보자 지원 재단 기금 조성
-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활성화

2. 운영

- 후원자 확보를 통한 운영재원의 확충

3. 지원

- 내부공익제보자를 청렴 활동가로 육성

- 세부 내용 논의

- 공익제보 당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 확립 및 전수
- 국민교육과정 내 공익제보 관련 내용 포함
- 상담사업
- 구상권 청구 TF팀 구성
- 캠페인 진행

활동내용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
------	-------------------------

-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 : 고발인(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조사 착수

<언론보도>

2017.08.30.	뉴스1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하나...檢, 고발인 조사 착수
	연합뉴스	檢 '고위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착수...고발인 조사
	SBS뉴스	검찰 '고위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착수...고발인 조사
	머니투데이	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나서
	서울경제	檢,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고발인 소환
	뉴스토마토	검찰, '법관 블랙리스트'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법률신문	서울중앙지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인 조사
	노컷뉴스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인 조사
	뉴시스	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인 조사...수뇌부 수사하나
	매일경제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아시아투데이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인 조사
	한국경제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수사
	세계일보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국민일보	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착수
2017.08.31.	투데이신문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실시

고위 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30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고위 간부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연구회 약화를 목적으로 판사들의 가입과 활동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 조사 협조요청을 거절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조사위가 학술대회 방해 등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하고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관여와 지시 정도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의 축소 지시·압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법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의혹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지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과에 따라 임 전 차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출처 : SBS 뉴스>

활동내용		2017 내부제보실천운동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일시	12.08.	장소	우리함께빌딩	참여인원	약70명

- 2017 내부제보실천운동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이문옥 밝은사회상 : 박헌영(K-스포츠재단 과장), 이종헌(LG팜한농 공익제보자), 임은정(서울북부지검 검사)
 이문옥 밝은보도상 :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 오마이뉴스 지유석 기자
 우정상 : JTBC 이규연 국장, 김재일 바리톤
 공로상 : 백진선 작가, 이용수 대표
- 2017 내부제보실천운동이 걸어온 길
- 올해의 내부제보 10대뉴스 선정



<언론 보도>

2017.12.04.	세계일보	본지 특기팀 '이문옥밝은보도상'
2017.12.05.	연합뉴스	'내부고발' 임은정 검사 등 3명 '이문옥 밝은사회상' 선정
	불교닷컴	이문옥 밝은보도상에 이석만 대표 수상
	아시아타임즈	팜한농 산재은폐 공익제보 이종헌씨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
2017.12.06.	불교포커스	이문옥 밝은사회상에 임은정, 박헌영, 이종헌
2017.12.08.	연합뉴스	2017 내부제보실천운동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식
		발언하는 이문옥 전 감사관
		'이문옥 밝은사회상' 받은 박헌영
	'이문옥 밝은사회상' 받은 이종헌	
	세계일보	본지 특기팀 '이문옥 밝은보도상'
2017.12.09.	불교포커스	"공익제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2017.12.10.	불교닷컴	"입막음 소송 금지 입법 청원 반드시 필요"

2017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 결산(안)

수 입				관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항	목	금액	비고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6,890,000		지 원 비	인건비	직원급여	14,500,000				
후원수입	후원금 및 행사	33,920,469				비정규직급여	7,678,368	행사용역 등			
편당수입	다음스토리편당	36,879,696			관리비	통신/소모품/발송	3,509,310	임대비포함			
	SBS편당	6,170,408				소계	25,486,388				
	소계	43,050,104		사 업 비	입법지원	토론회	1,082,770				
기타수입	결산이자 등	70,307				입법활동비	1,802,530	심포지엄			
					내부제보 지원		195,640	기자회견			
						제보자지원	19,319,585				
				스토리편당	도서발송 및 강연회	5,586,000		소계	28,126,525		
									회의비	총회	80,823
				경 상 비		임원회	955,750				
					홍보비	리플렛	612,000				
						홈페이지관리	500,000				
					행사비	행사홍보 등	4,424,895	편당후원			
						후원의밤	1,514,770	토크콘서트			
						프리마켓	2,598,750				
						비전워크샵	1,509,360	1,2회 차			
						송년회	5,273,050				
									소계	17,469,398	
									예비비	홈페이지제작	1,000,000
수입		83,930,880		지출		72,283,601					
				이월금		11,647,279					

제 3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정관 일부 개정(안)을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1항

내부제보실천운동 정관 일부 개정의 안

1. 개정 사유

- ▷ ① 단체 운영과 단체의 공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단체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익적 운영 등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총회 정족수를 과반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②,③ 현재 상임운영위원회가 아닌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장을 추천받아 위원장을 선출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관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
- ④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 필수 정관 요건에 맞춰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2. 개정 내용

- ▷ 정관 제1절 제14조 1항
정관 제2절
정관 제4절 제 26조 3항

2-1. 조문순번 변경

- ▷ 제4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신설로 기존 제40조 조문순서를 순차적으로 후순위로 변경함. (단, 해당 각조의 조문내용은 변경 없음.)

3.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표

구조문	신조문	비고
제1절 제14조 1항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1/5로 한다.	제1절 제14조 1항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과반으로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제2절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로 변경	
제4절 제26조 3항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절 제26조 3항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명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월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③ 기부금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4. 참고사항

- ▷ 이상의 내용은 2018년 1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의, 결정한 사항임.

제 4호 의안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18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3항, 제 15조 5항

2018 내부제보 사업계획(안)

1) 회 의

- 총회개최
- 운영위원회(연 2회)
- 집행위원회(매월 1회)

2) 입법활동 및 기구 설립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 6개단체 공동 공청회
 - : 청렴위 신설 공동 입법 청원 논의

3) 제보자 지원활동

- 내부제보자 상담센터 설립

4) 조직활동

- 청렴활동가(청렴강사) 육성
- 회원확대
- 회원 워크샵

5) 홍보활동

- 뉴스레터 발행
- 공익제보자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
- 캠페인 진행
 - : 공익제보 절차에 관한 홍보
 - : 청렴교육강화 (교과서 집필기준 내 포함)

6) 재정사업

- 후원의 밤
- 공모사업

2018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 예산(안)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24,000,000		사업비	입법활동	토론회	2,000,000			
								입법활동비	2,000,000	
후원수입	후원금	24,000,000			내부제보 지원		제보자지원	15,000,000		
								상담센터설립	2,000,000	
								교육활동	350,000	
사업수입	행사수입	10,000,000			회의비		총회	500,000		
								임원회	1,000,000	
								위원회활동비	1,200,000	
기타수입	공모사업	10,000,000			워크샵		임원워크샵	1,000,000		
								전체워크샵	1,000,000	
	소계	68,000,000		홍보비		홍보문자	350,000			
							홍보활동비	400,000		
							인식개선TF	1,000,000		
							뉴스레터	600,000		
						소계	28,400,000			
				경상비	일반관리 비	임대료	600,000			
								통신/발송비	1,530,000	우편 등
								소모품비	2,000,000	
					행사비		교통비	400,000		
								송년회	1,400,000	
								후원의밤	1,500,000	
					기타	이문옥 밝은사회상	3,800,000			
						업무추진비	400,000			
						소계	11,630,000			
				인건비		직원급여	20,400,000			
							용역급여	1,000,000		
							퇴직급여	3,490,000	2017년도포함	
							4대보험	1,451,200		
							후생기타	500,000		
						소계	26,841,200			
				예비비	경조비		300,000			
						기타		828,800		
						소계		1,128,800		
	수입	68,000,000				지출	68,000,000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부 록

*정관

*회원명단

내부제보실천운동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내부제보실천운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공익을 위한 공직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활성화하고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내부제보의 상담, 안내와 지원 등을 통한 내부제보자 권익 보호 사업
2. 내부제보사건의 신고 및 조사 담당기관 및 수사기관의 공정한 처리 촉구
3. 공직기관, 기업체, 학교 대상 내부제보 활성화 교육 및 캠페인
4. 내부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 사업
5.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 준비와 지원
6.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단체와 연대활동
7. 그 밖의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재]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1. 본 단체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2. 회원은 일반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3. 각 회원의 가입절차와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내규를 지킬 의무
2. 본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모임협의회]

- ① 본 단체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2조 [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소집과 방식]

-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안에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이상 이나 감사의 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의 소집은 상임대표 전원의 명의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 중 연장자가 맡으며, 상임대표 불출석시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맡는다.
- ④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 [정족수]

- ①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1/5로 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총회의 구성원이 불출석할 경우, 출결 및 안건의 의결권을 출석 회원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본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감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9. 기타 본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② 총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본 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위촉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책임자,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위촉직 운영위원은 법률지원단장, 상담센터 소장 등 본 단체에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15명 내외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전원 명의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들간의 협의로 정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감사 및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재적 1/3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단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의결에 부의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1/3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및 각 위원회의 장, 법률지원단장의 선출과 상담센터 소장을 임면하고,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를 인준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④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 ⑤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 ⑥ 본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21조 [집행위원회]

-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본 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집행하고 각 기구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상임대표 중 상임대표들간의 협의로 정하고, 상임대표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대표들 중에서 상임대표가 지정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임대표, 각 위원회의 장과 사무처 책임자로 한다.

제3절 공동대표, 상임대표, 고문, 자문위원, 감사 등

제22조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 ① 공동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대표는 10인 내외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동대표 중 3인 내외를 상임대표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상임대표는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사무처를 지휘 감독한다.

제23조 [고문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내부제보활동 및 사회투명성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의 상임고문을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내부제보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상임대표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법률지원단 등]

- ① 원활한 상담 및 법적 지원과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전문가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 ② 법률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상담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센터를 둘 수 있고, 상담센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25조 [감사]

- ① 본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명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본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의 사실이 있거나, 감사 결과 긴급한 의결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후원회

제26조 [위원회]

① 본 단체는 기획, 재정, 홍보, 조직, 대외협력 등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해당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회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자 희망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7조 [활동기구]

① 본 단체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 및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활동기구는 본 단체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처]

①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총장은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무와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사무에 관하여는 상임대표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며, 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④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무국장, 사무처장 등의 직책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이 결위 시 사무국장, 사무처장의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국장과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후원회]

① 본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후원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제5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0조 [지역조직]

본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1조 [부설기관]

본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32조 [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과 결산]

- ① 사무총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제34조 [수입]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장 정관개정

제35조 [정관 개정]

- ① 본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1/5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 ② 개정안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6장 해산

제36조 [해산 사유]

본 단체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7조 [해산 절차]

-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8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 칙

제39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대표단, 사무총장, 각 위원회의 장이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본부의 주요 직책을 맡거나 상임 선거운동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의 권한이 정지되며 선거활동 종료 이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복귀할 수 있다.

제40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까지 단체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및 창립총회의 의결, 준비위원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내부제보실천운동 회원명부 및 납부현황 (2018년 1월 기준)

권승구	김영수	박오복	신광식	이종령	조재현
권오영	김영숙	박윤정	신현철	이종현	차성복
권희청	김영인	박종린	안종훈	이지문	최석근
김나린	김은영	박헌영	양시경	이지윤	하윤옥
김동숙	김이슬	박헌배	오현석	이진혁	한경호
김명환	김 준	배병태	유인정	이충일	한만수
김미현	김현진	배현봉	은우근	이혜숙	허태곤
김민규	김형남	백수인	이경애	임준묵	황규한
김상균	류수연	백찬홍	이민경	전경원	
김서중	문성훈	서진희	이석만	정현경	
김성환	민영돈	석지관	이영이	조대희	
김연숙	박광서	송병춘	이용수	조은혜	

금액	인원 수
월 1만원	40명
월 2만원	11명
월 3만원	8명
월 5만원	4명
기타 및 일시후원	5명